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무부장관 소속 마약수사청 신설〉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0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
3. 회부연월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마약류단속은 경찰·검찰·해양경찰청·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인력부족 및 수사권제한 등으로 마약류사범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을 총괄하는 마약 수사청을 신설하여 그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u><신설></u> <u><신설></u>	제32조(법무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마약수사청을 둔다. ⑤ 마약수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총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2조제4항에 규정된 사무는 마약수사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찰청 또는 마약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중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마약수사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검찰총장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마약수사청장의 행위 또는 마약수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마약수사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검찰청,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마약수사청, 마약수사청장 또는 마약수사청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지칭하는 용어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그 추출물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¹⁾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등을 말함.²⁾

1) 수지(樹脂) 1. 소나무나 전나무 따위의 나무에서 분비하는 점도가 높은 액체. 또는 그것이 공기에 닿아 산화하여 굳어진 것.

2. (화학) 천연수지와 합성수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쉼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진정, 진통, 국소마취 등의 효과가 있어 의약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환각, 환시, 환청, 정신불안, 피해망상, 호흡기장애, 뇌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고 과도한 경우 사망의 가능성도 있음.

[마약류별 특성]

분류	종류	약리작용 (흥분/억제)	의약용도	부작용
마약	아편	억제	진정·진통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모르핀	억제	진정·진통	구토, 발한, 발열, 설사, 사망
	헤로인	억제	진정·진통	구토, 가려움, 호흡곤란, 사망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흥분, 정신혼동, 사망
	메타돈	억제	진정·진통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염산페티딘	억제	진정·진통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펜타닐	억제	진정·진통	호흡곤란, 현기증, 근육마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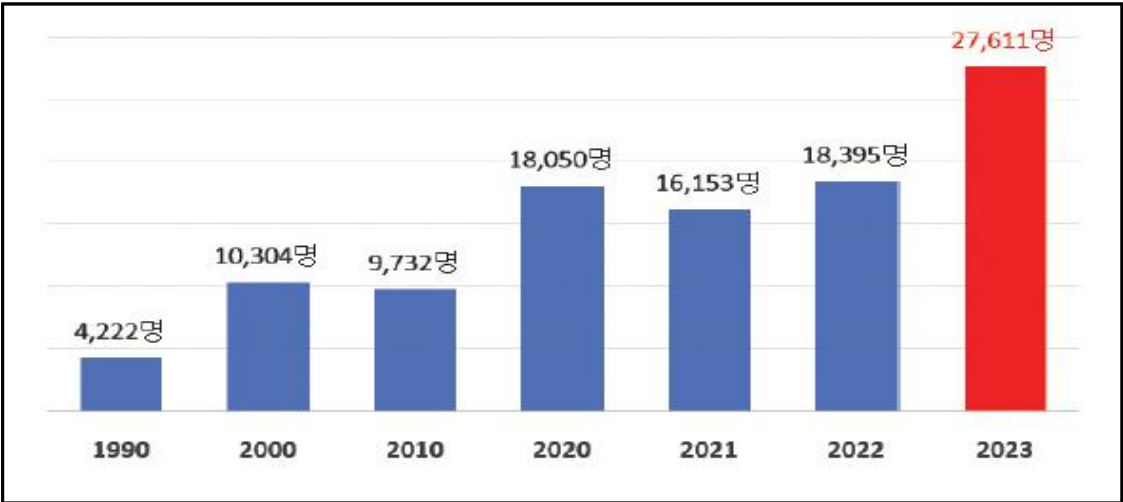
5.~9. (생략)

분류	종류	약리작용 (흥분/억제)	의약품도	부작용
정신성 약품	메트암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환시, 환청, 피해망상, 사망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수면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감각상실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감각상실
	LSD	환각	없음	환각, 환청, 환시
	날부핀	억제	진정·진통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덱스트로메노르판, 카리소프로돌	억제	진해거담	취한 행동, 환각, 환청
	펜플루라민	환각	식욕억제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대마	대마	환각	없음	도취감, 약한 환각

※자료 : 2023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4.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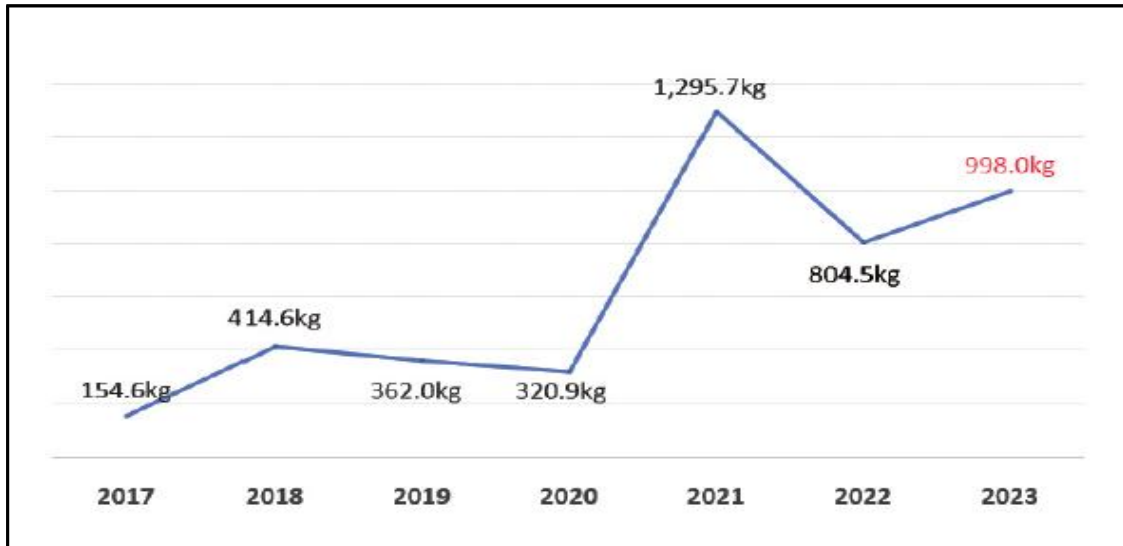
최근의 국내 마약류 관련 범죄 동향을 살펴 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0년 경까지는 약 1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까지 약 3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마약류 압수량도 2017~2020년 약 150~400kg에서 2021~2023년에는 약 800~1,300kg으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 : 2023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4.6.)

[연도별 마약류 압수량 현황]



※자료 : 2023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4.6.)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던 ‘마약류대책협의회’³⁾를 실·국장급⁴⁾에서 장관급 및 각 기관의 부기관장⁵⁾급 기구로 상향(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국무조정

3)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2조(기능)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마약류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관련 기관간 협조사항
3. 그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종전)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39호, 2019.4.25. 일부개정·시행)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품정책관

2. 마약류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학계·언론계 종사자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5) (현행)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840호, 2023.3.15. 일부개정·시행)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마약류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학계·언론계 종사자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실장)하였으며,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운영하던 동 협의회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⁶⁾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⁷⁾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편하였음.

또한 마약류 수사·단속 측면에서는 2023년 2월부터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 인천, 부산, 광주)에 검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

중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6)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3.8.16. 일부개정, 2024.8.9. 시행)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국가정보원차장·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차장·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언론계·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3.8.16. 일부개정, 2024.8.17. 시행)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마약류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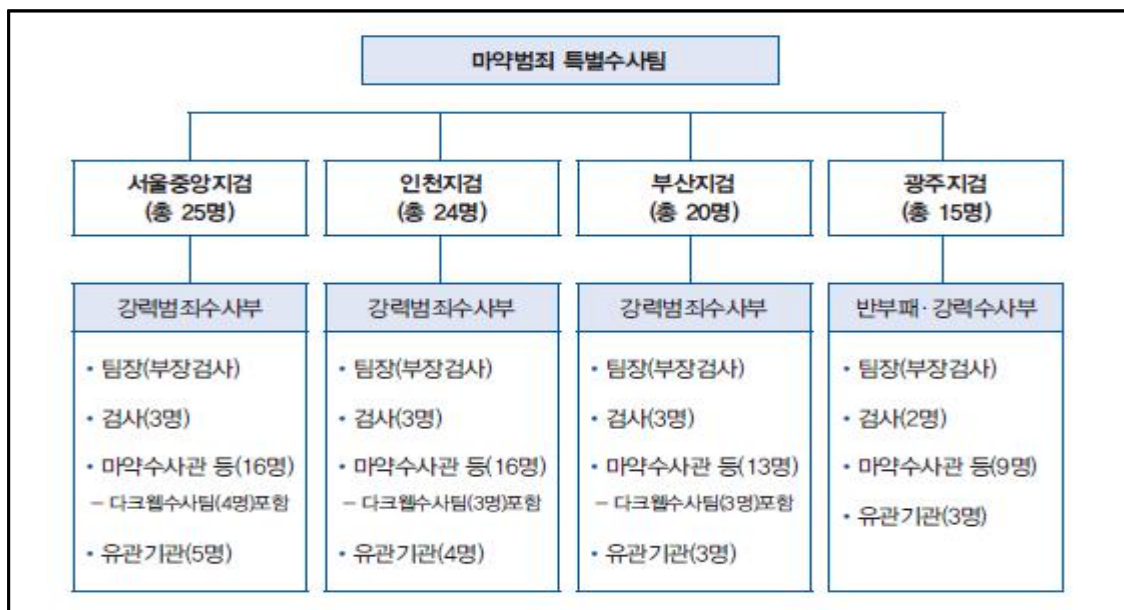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체(서울·인천·부산·광주)·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⁸⁾ 2023년 4월부터는 검찰청·경찰청·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2023년 4월부터)과 국방부·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인력(2023년 6월부터 추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음.⁹⁾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구성도]



※자료 : 2023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4.6.)

8) 대검찰청 보도자료,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 - 검찰·관세청·식약처·한국인터넷진흥원·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대응”, 2023.2.21., 2023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4.6.)

- 23.2.21. 전국 4대 권역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검찰 69명[부장검사 4명, 마약전담검사 11명, 검찰 마약수사관 54명(다크웹 수사팀 10명 포함)],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씩 합계 4명,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2명 등 총 84명 4개팀 규모로 출범함.

- 마약수사전담부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 검사 및 검찰 마약수사관과 ①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국제 마약밀수 분야), ②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인력(의료용 마약유통 분야), ③KISA의 마약류 판매광구 사이트 등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인터넷 마약유통 분야)를 팀원으로 구성

9) 2023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4.6.)

- 2023.4.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 (검찰) 전국 60개 검찰청 마약전담검사, 마약전담수사관 등 총 377명

· (경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등 총 37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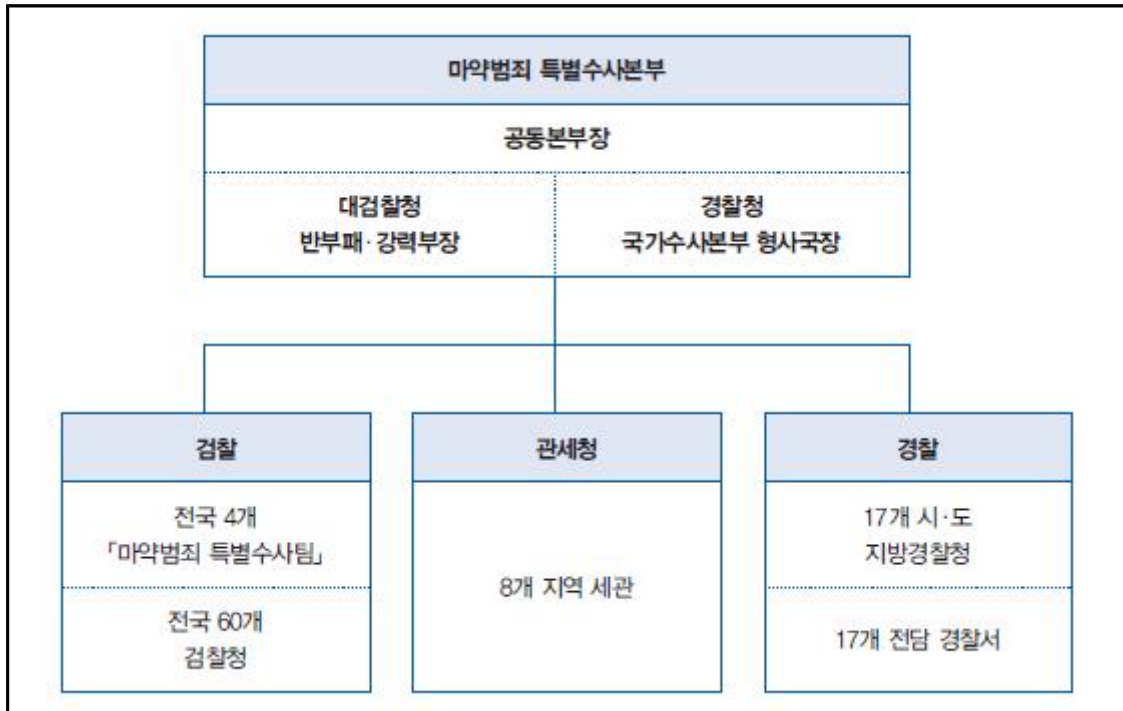
· (관세청) 전국 공·항만 마약류 밀수 전담 수사인력 총 92명

- 2023.6. 대검찰청 조직 개편*으로 공동본부장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에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정원이 추가로 합류하여 기존 전담인력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2023.5.23.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 (국방부)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소속 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 등 총 48명

· (해경) 전국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전담 수사 인력 총 86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체계]



※자료 : 2023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4.6.)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마약수사청을 설치하려는 것인데, 임시조직으로 보일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 대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약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제도 및 마약류 범죄 특별수사 체계는 2023년 2~8월에 마련

되어 약 1년 정도 시행되었는바, 일정 기간 현행 체계를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담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재의 검찰청의 마약류 수사·단속 사무만을 이관하는 경우 기존 수사체계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관계 기관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